

청주교육대학교 국내대학간 학생교류 및 학점 상호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 2001. 3. 1 규칙 제106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5조의 2(대학원 학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청주교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국내 타 대학교간 교류학생의 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와 국내 타 대학교간에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교류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대학교"라 함은 학생이 입학하여 재적중인 대학교를 말한다.
2. "수학대학교"라 함은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학생이 수학을 지원한 대학교를 말한다.

제4조(학점 및 학기 인정) 학술교류협정에 따라 수학 취득한 학점은 학칙 등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수학학기는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 2 장 본교 학생의 타 대학교 수학

제5조(지원자격) 타 대학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이하 “지원자”라 한다)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학사과정 지원자는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2.75(실점수 80점)이상인 자.
2. 대학원과정 지원자는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3.25(실점수 85점)이상인 자
3.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수학신청원(별지 1호 서식)을 소속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② 정규학기 수학은 수강 희망학기 개시 2개월 전에, 계절학기는 학술교류 대학교의 계절학기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7조(수학허가) 수학은 소속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허가한다.

제8조(정원) 정규학기 타 대학교 수학 학생의 정원은 본교 당해 학과정원의 20% 이내로 하며 계절학기 수학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9조(등록) ① 정규학기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본교에 해당학기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②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대학교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시설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협정사항에 따른다.

③ 계절학기 수학 학생은 수학대학교의 요구시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수학 대학교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수학허가의 취소) ① 수학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수업주수 4분의 1선 이내에 본교에 수학허가 취소 원(별지 2호 서식)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학허가 취소 절차는 이 규정 제7조 및 8조를 준용한다.

제11조(교과목의 이수) 이수 교과목은 교양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공교과목도 이수할 수 있다.

제12조(수강신청) 수강신청, 수강신청의 변경 및 취소는 수학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3조(학기당 취득학점) 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은 18학점 이내로, 대학원과정은 석사과정 9학점 이내로 하며 계절학기는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한다.

제14조(학점의 인정 범위 및 기준) ① 학점인정은 수학기간동안 계절학기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학사과정은 36학점 이내로 하며 대학원과정은 석사과정 9학점 이내로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예정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점인정 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③ 이수한 교과목이 우리대학의 교과과정 이외의 과목이라도 교양(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본교의 기준에 따라 환산함.

2. 교과목이 교과구분, 이수단위, 이수기간 및 성적산출방식 등이 본교와 현저하게 다를 경우에는 소속학과에서 학사관계규정과 교육과정에 의거 심의를 거친후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3. 기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함.

4. 휴학기간중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함.

제15조(학점인정 절차) 수학학점은 수학대학교의 수학결과 통보에 의하여 소정의 심의절차를 거쳐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제 3 장 타 대학교 학생의 본교 수학

제16조(지원자격) 본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대학교 총장의 수학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17조(지원신청) 소속대학교 총장은 지원자 명단을 학기 개시(계절학기 개강) 1개월 전까지 본교 총장에게 통보한다.

제18조(수학허가) 본교 총장은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지원자의 수학허가 여부를 확정하고 학기 개시(계절 수업 개강) 3주전까지 소속대학교 총장에게 통보한다.

제19조(정원) 정규학기 수학 학생의 정원은 당해 학과정원의 20% 이내로 하며 계절학기 수학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20조(등록금 및 수강료 등) ① 정규학기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학기간중 소속대학교에 등록금을 납입 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본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은 타대학과의 협정사항에 따른다.

③ 계절학기 수학 학생은 본교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수강허가의 취소) 수학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소속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속대학교에 수학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수강신청) 수강신청, 수강신청의 변경(별지 3호 서식) 및 취소는 본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3조(취득학점) ① 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은 18학점 이내로, 대학원과정은 석사과정 9학점 이내로 하며 계절학기는 계절당 6학점 이내로 한다.

② 수학기간동안 취득학점은 계절학기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학사과정은 36학점 이내로 대학원과정은 석사과정 9학점 이내로 한다.

제24조(취득학점의 처리) ① 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본교의 학칙 및 학업성적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수학기간 종료 후 2주 이내에 소속대학교에 통보한다.

② 전항의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5조(신분증의 발급) 수학이 허가된 학생에 대하여는 신분증(별지 4호 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6조(시설물의 이용) 수학 학생에게는 도서관, 실험실습실, 생활관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또는 관계규정을 적용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교류대 학간 협의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호]

수 학 신 청 원

지 원 자 인 적 사 항	소 속	대학교		학과(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번		전 화 번 호	()	-
	기 이수학기 평균평점				성 별
수학대학교	대학교 대학		학과(부)		학년
학기 구분	정규 학기()		계절 수업()		
수 학 기 관	년 월 일 ~		년 월 일		
수 강 예 정 교 과 목	교 과 목 명		학 점	비 고	

위와 같이 수학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 청 인 인

지 도 교 수 인

학 과(부) 장 인

청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2호]

수 학 허 가 취 소 원

소 속	대학교	학과(부)	학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번	
수학대학교	대학교	대학	학과(부) 학년
학 기 구 분	정규 학기(), 계절 수업()		
취 소 사 유			

위와 같이 수학 허가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 청 인

인

지 도 교 수

인

학 과(부) 장

인

청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3호]

수강신청변경원

지원자 인적사항	소속	대학교		학과(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	
	학번		전화번호	()	-
			성별	(남 · 여)	

수강신청 변경 내용	수강신청과목			변경과목				
	과목명	학점	이수예정 학기	과목명	학점	본교 성적인정 교과목		
						구분	교과목명	학점

위와 같이 수강신청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청인 (인)

지도교수 (인)

학과(부)장 (인)

청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4호]

교류 학생증

사진 부착	교류 학생증 학번: 성명:
발급번호	등록학기 : 200 년 학기 200 . . . 청주교육대학교총장